

2022년 제1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2 월 10 일

여 수 시 장

권 2

봉사장인

여수시 규칙 제787호

붙임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부.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(「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의 개정)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(「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)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(「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의 개정)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예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대행 및 대리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·소장이 대행한다.(신설 2002. 5. 10, 개정 2008. 10. 10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(대행 및 대리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2.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

3.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